

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4. 12. 18.>

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(제27조 관련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처분내용
1. 삭제 <2014.9.19.>		
2.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	제21조제2호	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30일)
3. 제21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	제21조제3호	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5일)
4. 최대적재량 1.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,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	제21조제4호	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5일)
5.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	제21조제5호	○ 1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30일) ○ 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60일) ○ 3차 이상: 위반차량 운행정지(90일)
6.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	제21조제6호	○ 1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60일) ○ 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90일) ○ 3차 이상: 위반차량 운행정지(120일)
7.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제21조제7호	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20일)
8.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제21조제8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제21조제8호	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10일)
9.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제21조제9호	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10일)
10.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	제21조제10호	○ 1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20일) ○ 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30일)
11.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	제21조제11호	○ 1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20일) ○ 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30일)
12. 화물자동차(영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)를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	제21조제12호	○ 1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20일) ○ 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30일)
13. 삭제 <2018. 12. 31.>		

14.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 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	제21조제14호	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10일)
15. 삭제 <2014.11.28.>		
16.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「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	제21조제16호	○ 1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20일) ○ 2차 이상: 위반차량 운행정지(30일)
17. 삭제 <2018. 12. 31.>		
18.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	제21조제18호	○ 1차: 사업 전부정지(10일) ○ 2차: 사업 전부정지(20일) ○ 3차: 허가취소
19.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한 경우	제21조제19호	○ 1차: 사업전부정지(10일) ○ 2차: 사업전부정지(20일) ○ 3차: 허가취소
20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·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고장·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. 다만, 제21조제2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삭제 <2024. 12. 18.> 나. 삭제 <2024. 12. 18.>	제21조제20호	○ 1차: 사업 전부정지(20일) ○ 2차: 사업 전부정지(40일) ○ 3차 이상: 사업 전부정지(60일)
2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·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으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·요금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지 않고 운송을 시작하거나,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구난동의를 받지 않고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한 경우(제21조제21호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)	제21조제21호	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10일)
22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·요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	제21조제22호	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10일)
23.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	제21조제23호	○ 1차: 사업 전부정지(10일) ○ 2차: 사업 전부정지(20일) ○ 3차: 사업 전부정지(30일)

24.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「도로교통법」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	제21조제24호	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60일)
25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	제21조제25호	○ 1차: 사업 일부정지(10일) ○ 2차: 사업 일부정지(20일) ○ 3차 이상: 사업 일부정지(30일)
26. 위·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·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	제21조제26호	○ 1차: 경고 ○ 2차 이상: 위반차량 감차 조치
27. 위·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·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	제21조제27호	○ 1차: 경고 ○ 2차 이상: 위반차량 감차 조치
28. 위·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·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·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	제21조제28호	○ 1차: 경고 ○ 2차 이상: 위반차량 감차 조치
29. 위·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·탈취하는 등 위·수탁차주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	제21조제29호	○ 1차: 경고 ○ 2차 이상: 위반차량 감차 조치
30.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·중량 및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	제21조제30호	○ 1차: 사업 일부정지(10일) ○ 2차: 사업 일부정지(20일) ○ 3차 이상: 위반차량 감차 조치
31. 화물자동차 운전자(법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)에게 「도로법」 제77조 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한 경우	제21조제31호	○ 1차: 사업 일부정지(10일) ○ 2차: 사업 일부정지(20일) ○ 3차 이상: 위반차량 감차 조치
3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	제21조제32호	○ 1차: 사업 일부정지(10일) ○ 2차: 사업 일부정지(20일) ○ 3차 이상: 위반차량 감차 조치

비고

1. 삭제 <2018. 12. 31.>
2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(제5호,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2년, 제26호의 경우에는 5년)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3. 비고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비고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4. 제12호의 위반행위에서 제외하는 "영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"에 대해서는 영 제5조제1항 전단 및 별표 1 제2호머목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